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5
----------	-----

발 의 년 월 일: 2022년 10월 17일
발 의 자: 이종배 의원(1명)
찬 성 자: 경기문, 김경훈, 김규남,
김용일, 김원중, 김원태,
김지향, 김춘곤, 김형재,
김혜지, 남창진, 도문열,
박영한, 박환희, 서상열,
송경택, 옥재은, 이민석,
이상욱, 이종태,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황철규
의원(24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와 시민참여 관련 유사 조례인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의 주요 내용과 통합하여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로 일부 개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함.
- ‘시민제안’ 및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에 대한 운영 근거 규정 마련
- 시민참여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조례상 중복 운영되는 시민참여관련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시민참여기본계획’으로 통합

2. 주요내용

- 가. 시민제안 제도 및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 운영의 근거 규정을 마련(안 제3장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 나. 4년마다 시민참여기본계획 수립 및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안 제4장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 다. 조례명 및 조문상의 “주민”을 “시민”으로 변경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국민 제안 규정 (대통령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로 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 칙”을 삽입한다.

제1조 중 “주민”을 각각 “시민”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주민”을 “시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주민”을 각각 “시민”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주민”을 “시민”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민제안”이란 시민이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행정운영의 개선 등 시 사무와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따른 민원

다.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라.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마. 그 밖에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집단에 대한 악의적 비방 등

6.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이란 제안의 접수·처리·결과 등을 공개하고 시민이 24시간 참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민”을 각각 “시민”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을 각각 “시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를 통해 접수된 시민의견이나 시민제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시민의 권리와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주민”을 각각 “시민”으로 한다.

제7조 앞에 “제2장 시민참여 활성화”를 삽입한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2장제7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14조를 제6조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를 제25조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6조)의 제목 “(위원회의 주민참여)”를 “(위원회의 시민참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민”을 “시민”으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7조)의 제목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를 “(공청회 등의 시민참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민”을 각각 “시민”으로 하고, “타”를 “다른”으로 하며,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을 “시민”으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8조)의 제목 “(예산편성의 주민참여)”를 “(예산편성의 시민

참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주민”을 각각 “시민”으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주민”을 각각 “시민”으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의 제목 “(주민의견조사의 실시)”를 “(시민의견조사의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제3항까지 중 “주민”을 각각 “시민”으로 한다.

“제3장 시민제안 제도의 운영(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시민제안 제도의 운영

제6조(종전의 제14조) 중 “주민”을 “시민”으로 하고,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시민제안의 제출) ① 시민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시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민제안을 제출하려는 시민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 등 인터넷을 활용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민제안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접수 및 검토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시민제안을 신속히 접수하고,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 등 인터넷을 통하여 시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우편·팩스로 접수된 시민제안은 시장이 제안자를 대신하여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에 등재 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제안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 등

인터넷에 공개한다. 다만, 검토결과 공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민제안에 대해서는 검토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검토결과 공개기준, 공개 방법, 공개기한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우수제안의 선정 및 시상) 시장은 제출된 시민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제안(이하 “우수제안”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으며, 우수제안의 선정 기준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우수제안의 실시 및 보완) 시장은 우수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우수제안을 원안대로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제17조(우수한 시민제안의 확산) 시장은 우수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그 시민제안의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장 시민참여기본계획 수립 및 시민참여위원회 설치·운영(제18조부터 제2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시민참여기본계획 수립 및 시민참여위원회 설치·운영

제18조(시민참여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행을 하고자 서울특별시 시민참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정 여건의 진단·평가
2. 시민참여 정책의 기본구상
3.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정책목표와 추진계획
4.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소요재원
5. 그 밖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연구기관이나 학술단체 등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시민참여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시민참여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분야별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시민참여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연구·제정·수립·정비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3. 시민참여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참여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민참여를 총괄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민참여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민참여 업무담당 부서장(4급 상당)으로 한다.

제2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

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위원회 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시민참여기본계획 수립 적용례) 제1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계획의 최초 계획수립 및 계획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0항 중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10조”를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제11조”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10조”를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제11조”로 한다.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서울특별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민참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시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3. “시민참여”란 시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와 시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4. “협력”이란 시가 해야 할 책임과 시민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상호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시민제안”이란 시민이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행정운영의 개선 등 시 사무와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따른 민원

다.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라.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마. 그 밖에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집단에 대한 악의적 비방 등

6.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이란 제안의 접수·처리·결과 등을 공개하고 시민이 24시간 참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시민참여는 시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든지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시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② 시민참여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시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시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를 통해 접수된 시민의견이나 시민제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누구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시가 가진 정보는 시민의 공유 재산이며, 시민은 그 정보를 받아볼 권

리가 있다.

③ 시민은 시정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불리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시민참여 활성화

제7조(위원회의 시민참여) 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일반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은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분야의 남성 또는 여성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 이하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그 기능에 따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례화 하여 운영한다.

제8조(공청회 등의 시민참여) ① 시장은 시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청회 또는 토론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시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9조(예산편성의 시민참여)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개와 시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시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 ①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정정책에 대한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청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5,000명 이상의 시민 연서로 토론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③ 시장은 토론, 공청 및 설명회가 청구된 주요정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시장은 토론, 공청 및 설명회의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 토론 청구인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개최한다.

④ 시장은 토론, 공청 및 설명회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토론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한다.

제11조(회의공개 원칙) 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가 개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록 및 회의결과, 회의안건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발언한 위원들을 익명 처리할 수 있다.

②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시민의견조사의 실시) ① 시장은 시의 정책 등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후 즉시 시민의견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한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

제3장 시민제안 제도의 운영

제13조(시민제안의 제출) ① 시민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시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민제안을 제출하려는 시민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 등 인터넷을 활용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민제안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접수 및 검토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시민제안을 신속히 접수하고,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 등 인터넷을 통하여 시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우편·팩스로 접수된 시민제안은 시장이 제안자를 대신하여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에 등재 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제안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

등 인터넷에 공개한다. 다만, 검토결과 공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민제안에 대해서는 검토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검토결과 공개기준, 공개방법, 공개기한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우수제안의 선정 및 시상) 시장은 제출된 시민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제안(이하 “우수제안”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으며, 우수제안의 선정 기준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우수제안의 실시 및 보완) 시장은 우수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우수제안을 원안대로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제17조(우수한 시민제안의 확산) 시장은 우수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그 시민제안의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장 시민참여기본계획 수립 및 시민참여위원회 설치·운영

제18조(시민참여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행을 하고자 서울특별시 시민참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정 여건의 진단·평가
2. 시민참여 정책의 기본구상
3.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정책목표와 추진계획
4.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소요재원

5. 그밖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연구기관이나 학술단체 등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시민참여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시민참여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분야별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시민참여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연구·제정·수립·정비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3. 시민참여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참여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민참여를 총괄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민참여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민참여 업무담당 부서장(4급 상당)으로 한다.

제2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위원회 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시민참여기본계획 수립 적용례) 제1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계획의 최초 계획수립 및 계획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0항 중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10조”를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제11조”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10조”를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제11조”로 한다.

다.

4. “협력”이란 시가 해야 할 책임과 주민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상호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4. -----
- 시민-----

-----.

5. “시민제안”이란 시민이 서울 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행정운영의 개선 등 시 사무와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따른 민원
다.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라.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마. 그 밖에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집단에 대한 악의적 비

<신 설>

제3조(기본이념) 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든지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이행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방 등

6.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이란 제안의 접수·처리·결과 등을 공개하고 시민이 24시간 참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시민----- 시민-----

--- 시민----- 시민-----

--.

② 시민----- 시민-----

-----.

제4조(시장의 책무) ① ----- 시민
----- 시민-----
----- 시민-----

-----.

② 시장은 시민참여를 통해 접수된 시민의견이나 시민제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주민은 누구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시가 가진 정보는 주민의 공유 재산이며, 주민은 그 정보를 받아볼 권리가 있다.

③ 주민은 시정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불리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신 설>

제6조(위원회의 주민참여) 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일반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7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① 시장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청회 또는 토론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

② ----- 시민-----
----- 시민-----

③ 시민-----

제2장 시민참여 활성화

제7조(위원회의 시민참여) ① ---

----- 시민-----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공청회 등의 시민참여) ① -

--- 시민-----

----- 다른-----
----- 따라-----

② -----

----- 시민-----

극 노력해야 한다.

제8조(예산편성의 주민참여)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시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

① 주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정정책에 대한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청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5,000명 이상의 주민 연서로 토론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③ (생략)

④ 시장은 토론, 공청 및 설명회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 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토론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한다.

-----.

제9조(예산편성의 시민참여) -----

시민-----

시민-----

제10조(시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

① 시민-----

② -----

시민 -----

③ (현행과 같음)

④ -----

시민-----.

제10조 (생 략)

제11조(주민의견조사의 실시) ①

시장은 시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한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참여기본계획 수립) 시

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주민참여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주민참여연구회) ① 시장은

중·장기적인 주민참여 체계 및 방안에 대한 기본계획을 연구·조사하기 위해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행정1부시장,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연구회를 15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2조(시민의견조사의 실시) ① -

시민-----

시민-----.

② ----- 시민-----

-----.

③ ----- 시민-----

-----.

<삭 제>

<삭 제>

인 이내로 둔다.

② 제1항의 주민참여연구의 기능은 국내외 주민참여제도 연구, 주민참여기본조례 개정에 대한 연구 등 주민참여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다룬다.

③ 연구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주민참여와 관련하여 연구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⑤ 연구회 회의 수당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3장 시민제안 제도의 운영

제13조(시민제안의 제출) ① 시민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시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민제안을 제출하려는 시민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제1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 참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 설>

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 등 인터넷을 활용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민제안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

----.

제14조(접수 및 검토 등) ① 시장
은 제출된 시민제안을 신속히 접수하고,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 등 인터넷을 통하여 시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우편·팩스로 접수된 시민제안은 시장이 제안자를 대신하여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에 등재 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제안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 등 인터넷에 공개한다. 다만, 검토결과 공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민제안에 대해서는 검토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제15조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있으며 검토결과 공개기준, 공개 방법, 공개기한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5조(우수제안의 선정 및 시상)

시장은 제출된 시민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제안(이하 “우수제안”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으며, 우수제안의 선정 기준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우수제안의 실시 및 보완)

시장은 우수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우수제안을 원안대로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제17조(우수한 시민제안의 확산)

시장은 우수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그 시민제안의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장 시민참여기본계획 수립 및

시민참여위원회 설치·운영

제18조(시민참여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행

을 하고자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정 여건의 진단·평가

2. 시민참여 정책의 기본구상

3.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정책목표와 추진계획

4.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소요 재원

5. 그밖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연구기관이나 학술단체 등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시민참여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시민참여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시민

<신 설>

<신 설>

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분야별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시민참여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연구·제정·수립·정비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3. 시민참여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참여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민참여를 총괄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민참여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신 설>

<신 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민참여 업무담당 부서장(4급 상당)으로 한다.

제2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 설>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신 설>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위원회 존속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존속 기한은 5년으로 한다.